

제5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2. 9. 24.(월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김충식 부위원장
홍성규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의결 가 ~ 의결 자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 (서면결의)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09-30차 전원회의('09.7.9), 제2010-1차 전원회의('10.1.14), 제2011-17차 전원회의('11.3.21), 제2011-67차 전원회의 ('11.11.30)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
- 보고 가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1(서면보고) 제1항에 따른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'의 안건에 해당됨

2] 의결사항

가. 대표자 변경신고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- (주)씨앤엠강남 케이블티브이 등 2개사 - (2012-54(서)-215)

○ 대표자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(주)씨앤엠강남케이블티브이 및 (주)씨앤엠울산케이블 티비에 대해 원안대로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- 위반내용 :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나 이를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방송법 제15조제2항제1호를 위반
- 처분내용 : 대표자 지연신고 행위에 대하여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 부과

나.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- 대구케이블방송(주) 등 2개사 - (2012-54(서)-216)

○ 「방송법」 제77조제1항에 의거, 대구케이블방송(주) 등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< 승인내용 >

① 아날로그 묶음상품 변경(요금인상, 폐지)

법인명/상호	변경내용				비 고
	변경 전		변경 후		
	이용요금	채널수	이용요금	채널수	
대구케이블방송(주)	월 7,000원 이하 (국민형, 묶음2)	70	월 8,000원 이하 (국민형, 묶음2)	70	VAT별도
	월 8,000원 이하 (알뜰형, 묶음3)	73	폐 지		

② 디지털 데이터방송 상품 신설

법인명/상호	상 품 명	내 용	이용요금	비 고
(주)씨앤엠강남 케이블티브이	PVR	방송프로그램 녹화 서비스	월 2,000원 이하	VAT별도

다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 - (주)씨앤엠 등 25개사 - (2012-54(서)-217)

○ 「방송법」 제15조제1항에 의거, (주)씨앤엠 등 2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설 변경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법인명/상호	변경사항	신청 주요내용
(주)씨앤엠 계열 17개사 *	운용채널 및 시설변경	-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채널 증설
(주)현대에이치씨엔 계열 6개사 **	"	-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채널 증설 및 채널 효율화 등
대구케이블방송(주)	"	-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채널 증설
티씨엔대구방송(주)	"	- 디지털 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채널 증설

* **씨앤엠계열 17개사** : (주)씨앤엠, (주)씨앤엠중랑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송파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중앙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구로금천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서초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노원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동서울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마포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북부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서서울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용산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동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기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우리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, (주)씨앤엠강남케이블티브이

** **현대엔HCN계열 6개사** : (주)현대에이치씨엔서초방송, (주)현대에이치씨엔동작방송, (주)현대에이치씨엔, (주)현대에이치씨엔부산방송, (주)현대에이치씨엔금호방송, (주)현대에이치씨엔경북방송

라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 - 금강방송(주)의 (유)군산유선방송 합병 - (2012-54(서)-218)

○ 「방송법」 제15조제1항에 의거, 금강방송(주)이 신청한 (유)군산유선방송에 대한 합병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내용

① 합병(존속)법인 : 금강방송(주)(대표자 : 이종성, 이한오)

주요사업	사업권역	주요 주주	경영현황('11년 12월)
종합유선방송 사업	전북 군산, 익산	·이안삼량 39.72% ·(주)금강정보통신 22.59% ·그외 특수관계자 13.58% ·(유)군산유선방송 2.00%	·자본금 124억원 ·매출액 200억원 ·영업이익 8.9억원 ·당기순이익 9.4억원

② 피합병법인 : (유)군산유선방송(대표자 : 이안삼량)

주요사업	사업권역	주요 주주(5% 이상)	경영현황('11년 12월)
전송망 사업 (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제공역무)	전북 군산, 익산	·이한규 47.5% ·이한오 25.0% ·이지영 10.0% ·강하남 10.0% ·이한숙 7.5%	·자본금 5.0억원 ·매출액 23.0억원 ·영업이익 3.7억원 ·당기순이익 4.8억원

③ 합병 전후 주주구성

존속법인명	주요 주주	
	합병 전	합병 후
금강방송(주)	·이안삼량 39.72%	·이안삼량 22.32%
	·(주)금강정보통신 22.59%	·이한규 21.65%
	·이한숙 7.79%	·(주)금강정보통신 12.69%
	·(유)군산유선방송 2.00%	·이한오 11.79%
	·이한오 1.50%	·이한숙 7.66%
	·이한규 1.50%	·강하남 5.18%
	·강하남 1.41%	·이지영 5.16%
	·이지영 1.38%	·자기주식 1.13%

다.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- (2012-54(서)-219)

- 「방송법」 제76조의2 및 「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, 원안대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을 의결함.

<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(총 7인) >

분 야	성 명	성 별	현 직	비 고	
위원장	양문석	남	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	-	
위원	학계	박동숙	여	이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	연임
	학계	정인숙	여	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	신임
	법률	오승돈	남	한로법률사무소 변호사	연임
	연구기관	박동욱	남	KISDI 방송정책연구 그룹장	신임
	소비자	김연화	여	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원장	연임
	체육	박필순	남	대한체육회 사무차장	신임

※ 임기 : 위촉일로부터 2년

바. 방송평가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- (2012-54(서)-220)

- 「방송법」 제31조제3에 의거,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궐위에 따른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주정민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의결함

※ 임기 : 전임자의 잔여임기(2012. 9. 24. ~ 2013. 8. 30)

사. 「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」 (고시)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- (2012-54(서)-221)

- 번호이동성 적용 대상 사업자와 신청자격 확대를 위해 마련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번호이동 의무대상 사업자 확대

- '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(MVNO)'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의무대상 사업자에 포함

②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에게 번호이동 신청자격 부여

- 후불↔선불간, 선불↔선불통화서비스간 변경하면서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- 선불통화서비스 가입자의 번호이동을 위해 번호이동성관리기관(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)에게 선불가입자 번호DB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,

-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자사의 선불가입자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등록·변경 처리 결과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에 제공하도록 함

③ 번호이동 신청절차 개선

- 번호이동 신청방법을 '직접 방문' 이외에 '온라인 영업' 등 비대면 채널로 확대

④ 번호이동 시행시기

- 재판매사업자(MVNO)의 번호이동은 즉시 시행
- 선불통화서비스의 번호이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

○ 향후 일정

- 관보 게재 및 시행 : 2012. 9월중

아. 도시계획시설중 '통신시설'의 범위 지정을 위한 고시 제·개정안에 관한 건

- (2012-54(서)-222)

-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76조에 따라 '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업용 전기통신설비'를 정하기 위해 마련한 「기본시설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설비」 고시 제정안과 「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기준」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(도시계획시설중 통신시설의 범위)

①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통신설비의 범위 지정 고시 제정

- 해저케이블 육양국, 국제전화 관문국, 위성통신지구국, 이동통신 전송국사

② 「가입자선로 공동활용 기준(고시)」 부칙 개정

- 기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해제되는 통신시설이라 해도 다른 사업자가 상호접속·설비제공·가입자선로공동활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제이후 2년간 국사당 33㎡의 면적을 제공 의무를 부여

○ 위원회 보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

- 도시계획시설에 '이동통신용 전송국사 설비'를 추가

○ 향후 추진 일정

- 관보 게재 및 공포·시행 : '12년 9월말

자.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- (2012-54(서)-223)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4조제2항에 의거, (주)KT가 제출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< 인가 내용 >

구분	협 정 명
1	KT(시내전화)와 CJ헬로비전(인터넷전화)간 080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 상호접속협정
2	KT(시내전화)와 CJ헬로비전(인터넷전화)간 대표번호서비스 상호접속협정
3	KT(시내전화)와 삼성SDS(국제전화)간 상호접속협정

① KT와 CJ헬로비전간 080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 상호접속협정

- (접속망 구성) 기존 협정('06. 4월)에 의해 연결된 KT의 시내전화망과 舊 (주)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망을 활용하여 080착신자요금부담 서비스를 제공
- (접속료 산정) 접속통화료는 이용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제공사업자인 KT에게 지급하며, 접속통화요율은 방통위가 결정·통보한 요율(시내전화 18.5694원/분)을 적용

② KT와 CJ헬로비전간 대표번호서비스 상호접속협정

- (접속망 구성) 기존 협정('06. 4월)에 의해 연결된 KT의 시내전화망과 舊 (주)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의 인터넷전화망간 상호접속망을 활용하여 대표번호서비스를 제공
- (접속료 산정) 접속통화료는 이용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제공사업자인 KT에게 지급하며, 접속통화요율은 방통위가 결정·통보한 요율(시내전화 18.5694원/분)을 적용

③ KT와 삼성SDS간 국제전화 상호접속협정

- (접속망 구성) 접속이용사업자(삼성SDS)의 국제전화 교환기로부터 접속제공사업자(KT)의 시내전화 교환기까지의 접속회선 구성
- (접속료 산정) 접속통화료는 이용사업자인 삼성SDS가 제공사업자인 KT에게 지급하며, 접속통화요율은 방통위가 결정·통보한 요율(시내전화 18.5694원/분)을 적용

③ 보고사항

가.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도메인이름 등록 시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 내용

①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

- (개정사유)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개정계획’에 따라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,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 개정
- (개정내용) (1)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고침(예: 환불하지→되돌려 주지), (2)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 구성(예 : 범위안에서→범위에서), (3)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한자 병기(예 : 개의→개의(開議)) 등

② 도메인 등록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수집 금지(안 제11조의4제2항)

- (개정사유)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금지한 ‘정보통신망법 개정(‘12.2.17개정, ‘12.8.18시행)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개정
- (개정내용) 도메인이름 등록 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 등록인 본인확인 방법 중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요구를 금지하고,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

○ 향후 일정

-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: ‘12. 10월 ~ 11월
- 위원회 의결 및 법제처 심사요청 : ‘12. 12월